

 보 도 자 료 			
보도일시	2021. 12. 30.(목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29.(수) 15:00 이후 / 총 7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	과 장 신호철 사무관 광수연 사무관 박효순	044-202-7918 044-202-7919 044-202-7225
	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	부 장 이근열 차 장 양영미	052-704-7202 052-704-721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.

- 고용노동부 차관, 배달라이더 쉼터(울지로 훈련원공원)에서
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'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*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(이하, '플랫폼종사자'라 함)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.

*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·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(예: 바로그, 로지 등)

-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,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.
-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,
 - 최근 정보기술(IT)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·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(始發點)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,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,

-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*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* (21.7월 적용: 12개)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, 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학교), 건설기계조종사, 화물차주

<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>

- '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(배달라이더 포함)와 대리운전기사로,

- '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,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.

-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*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**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,

* 이는 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을 포함

**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·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

-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*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.

* 이는 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,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서면계약 등 사전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별 노무제공 건도 해당

-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(1.4%)을 곱하여 산정하고,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.

* 다만, '22.7.1.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.2%p 상승(사업주 0.8%, 종사자 0.8%)

-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**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**하고,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*에 해당하지 않으며, **적극적인 재취업 노력**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**120일~270일간 구직급여**를 받을 수 있다.

* 다만,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% 이상 소득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

- 아울러, 출산일 전 **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**하고, **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** 경우 **출산전후급여**를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간 받을 수 있다.

<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>

- **노무제공사업주**(이하, '사업주')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**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**,
- 사업주는 **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** 플랫폼 종사자의 **피보험자격 취득**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, 이후에는 **매월 해당 노무제공자*의 보수액**을 신고해야 한다.

* 다만,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대가가 기재된 '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'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

- 또한,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**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**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.

- 다만, **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**(이하, '플랫폼사업자')*가 **이용 계약**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**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**이 이루어지므로,

* 노무제공플랫폼(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·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)을 구축·운영하는 사업자

-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**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**해지는 반면에 **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**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
-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,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48조의4에 따라 **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**해야 한다.

-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**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**하기 위해 **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**할 예정이다.

<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>

- 한편, **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**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**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**할 예정이다.

* (대상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

-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**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**하면 **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**할 예정이며,
-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**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**할 계획이다.

<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>

-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·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**4개 권역에 설치한 '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'**에서 **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**할 예정이며,

구분	관할구역	연락처
서울센터	서울, 강원, 경기북부	02-6946-0500
경인센터	인천, 경기남부	031-712-0500
부산센터	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	051-790-0301
대전센터	대전, 광주, 충남, 충북, 전남, 전북, 제주	042-718-0600

- 특히,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**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:1 One-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**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, **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**하여

- 시행 첫날인 2022.1.1.부터 3개월간 “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집중신고기간”을 운영하여 제도의 정착률을 지원하고,

* 해당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

-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·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.

<고용노동부 차관,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>

- 한편,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.29.(수)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,

-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,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·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.

< 배달 라이더 쉼터 방문 개요 >

- ◇ 일시/장소: 12. 29.(수), 15:00~ /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
- ◇ 주요 참석자: 고용노동부 차관, 고용정책실장, 고용서비스정책관,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이사 등
- ◇ 전달물품: 넥워머, 핫팩 등

- 이날 박화진 차관은 “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 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.”라면서,

- “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,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곽수연 사무관, 박효순 사무관 (☎044-202-7919, 7225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



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

보험료를 및 혜택은?

보험료율	1.4%(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.7%)
구직급여	· (수급요건)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, 제한 사유(자발적 이직 등)에 해당하지 않고, 취업하지 못한 상태,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· (지급기간·금액) 기초일액의 60%(상한액은 1일 6.6만원)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~270일 지급
출산전후급여	· (수급요건)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,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· (지급기간·금액) 출산 전후 90일,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%(월 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80만원)

가입 신고는 누가?

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

피보험자격 취득신고	피보험자격 상실신고	월 보수액 통보	보험료 원천공제
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사업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* 단기간노무제공자(계약기간 17개월미만)는 노무제공자(원천징수)신고서 제출	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할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*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	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	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후 납부

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,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,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

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

피보험자격 취득신고	피보험자격 상실신고	월 보수액 통보	보험료 원천공제
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사업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* 단기간노무제공자(계약기간 17개월미만)는 노무제공자(원천징수)신고서 제출	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할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*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	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	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납부

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,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,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

문의는?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
신고는? 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, 고용상태타당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에서 작성·제출 가능




① 고용보험 적용

- '고용·산재토탈서비스' 접속 및 사용 방식,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, 사업장 성립, 피보험자격 취득,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

서울 (서울, 강원도, 경기도,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남양주시, 구리시, 가평군)	주소	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(수송동, 연합뉴스빌딩) 11층			
	대표번호	02-6946-05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223-3102	3부	0502-223-1204
경인 (인천광역시, 경기도 (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남양주시, 구리시 가평군 제외))	주소	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(삼산동, 엘림타워) 501호			
	대표번호	032-712-05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451-1102	2부	0502-451-1103
부산 (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경상남도, 경상북도)	주소	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(초량동, 아모레퍼시픽) 10층			
	대표번호	051-790-03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661-1102	2부	0502-661-1103
대전 (광주광역시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, 대전광역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)	주소	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(둔산동, KT&G) 7층			
	대표번호	042-718-0600			
	팩스번호	1부	0502-870-1102	2부	0502-870-1103

② 구직급여 · 출산전후급여 수급

- 구직급여 수급요건,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등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
- 고용노동부 대표번호: 1350